#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(황명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865

발의연월일: 2024. 8. 14.

발 의 자:황명선・이기헌・민병덕

송재봉 · 황정아 · 한민수

김우영 · 염태영 · 이해식

서미화 · 한준호 · 조계원

김성회 · 장경태 · 문진석

박수현 의원(16명)

#### 제안이유

현재 군 의료기관은 군의관·공중보건의 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, 군내(軍內) 군의관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임상경험이 부족한 단기복무(36개월) 군의관이고 군의관 지원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향후 군 의료체계를 비롯하여 유사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군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여 국군장병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군 의무장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(이하 "의무사관학교"라 함)를 설치함(안 제1조).
- 나. 의무사관학교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함(안 제2조).
- 다. 의무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17세 이상 23세 미만의 사람으로 「군인사법」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(안 제3조).
- 라. 의무사관학교 교육과정은 일반학 및 군사학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,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 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(안 제5조).
- 마.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은 중위로 임용함(안 제9조).
- 바. 의무사관학교는 교육·실습·연구 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부설 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황명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

안」(의안번호 제286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

- 제1조(설치의 목적) 군(軍)의 의무장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고자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둔다.
- 제2조(수업연한) 국군의무사관학교(이하 "의무사관학교"라 한다)의 수 업연한(修業年限)은 6년으로 한다.
- 제3조(입학 자격) 의무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  - 1. 17세 이상 23세 미만일 것. 다만,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.
  - 2. 「군인사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  - 3. 「고등교육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
  - 4.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
- 제4조(군적) 의무사관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입학한 날에 사관생도의 군적(軍籍)에 편입된다.
- 제5조(교과과정) ① 의무사관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되,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, 일반

- 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.
- ③ 제1항의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여하는 「고등교육법」 중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6조(교장 등의 임용) ① 의무사관학교에는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[군인, 군무원(軍務員)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]을 둔다.
  - ② 교장은 장성급(將星級)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 령이 임명한다.
- 제7조(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) ① 제6조제1항의 공무원 중 일반학과 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(職種) 및 자격에 관하여는 「고 등교육법」 제16조를 준용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가운데 교수 및 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,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,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.
  - ③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 - ④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·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, 그 임용기간에는 「교육공무원법」 제 11조의3을 준용하며, 보수·연수·신분보장·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

- 는 「교육공무원법」 및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을 각각 준용한다.
- ⑤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학위 수여) ① 의무사관학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6년의 대학으로 보고, 그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.
  - ② 제1항 따른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졸업자의 임용) ①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의사국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중위로 임용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중위로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은 군적에서 제적된다.
- 제10조(학비 등의 지원 및 반환) ① 의무사관학교 생도의 학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.
  - ② 의무사관학교 생도에게는 수당과 의복,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고 급식을 한다.
  - ③ 제9조에 따라 장교로 임용된 사람이 「군인사법」 제7조제1항제 1호 본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한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(이하 "경비"라 한다)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

- 1.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(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·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)외의 사유로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
- 2.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
-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반환의무자가 경비를 반환하지 아니 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- 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(수업료, 그 밖의 납부금을 포함한다)을 감안하여 제3항에 따라 라 반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하여야 한다.
-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.
- 제11조(부설교육기관 등) ① 의무사관학교는 교육·실습·연구 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.
  - ② 제1항의 교육기관 및 연구소의 명칭과 조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의무사관학교 설치 등을 위한 준비행위)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

행 전에 의무사관학교의 설치 및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.